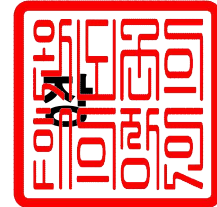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의 자 : 김매숙 의원

3.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특성과 이용수요를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대상과 등록·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동

지원센터의 위탁기간과 재위탁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포함하고, 등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대상 및 등록·심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기간 및 이용기간 연장 절차를 정비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위탁 평가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안 제20조)
- 종전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5.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조례안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6.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2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7,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2팀(전화: 061-550-59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 2.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통약자의 교통약자”를 “교통약자”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장애의”를 “다른 장애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다목)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접수일 부터”를 “접수일부터”로,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심사 할”을 “재심사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나.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 기간 및 휠체어 이용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 기간 및 휠체어 이용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

량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신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2조의3(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2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 기간 및 보행보조기구 사용 여부가 명시된 서류

나. 제12조의2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다. 제12조의2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라. 제12조의2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마.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재활의학과 전문
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
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2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특별
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
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
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
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
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
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
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가 탑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대상자의 안전한 승·하차 및 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보조인 1명을 동승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로, “특별교통수단을”을 “특별교통수단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1조 및 제12조”를 “제12조 및 제12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운전자의”를 “이용자의”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목적지까지의”를 “목적지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해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를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로, “연장여부”를 “재위탁 여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센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 한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위탁을 위한 평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위탁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 차례의 연장을 한 것으로 본다.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 장애() ☐ 65세 이상 고령자 ☐ 기타()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 체 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해당무
생활형태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 이동지원센터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동 ○○번지)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장애유형		☐ 영구장애 ()		☐ 일시적 장애 ()	
차량유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정사유					
년 월 일 완도군수(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 (인)					

210mm×297mm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 장애()			☐ 65세 이상 고령자				
		☐ 기타()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 체 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안내

- ①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나. 그 밖의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 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상이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 이용계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다. 5·18민주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장해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 이용계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 이용계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 마. 65세 이상인 사람, 임산부 또는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 및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 바.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이용대상자: 해당 이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 이동지원센터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신 : ○○○ 귀하(○○동 ○○번지)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 유형		()			
차량 유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정 사유					
년 월 일					
완도군수(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 (인)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생략)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
-----.

- 1.-----
----- 다른 장애의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2.·3. (생 략)

3.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
족 및 보호자 2명 이내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
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생 략)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
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
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
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 략)

<신 설>

이 어려운 사람

4.·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5. -----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특별교통수단등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
호-----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 설>

나.·단. (생 략)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 이용계약 기간 및 월차임 이용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 이용계약 기간 및 월차임 이용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라.·마.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마. -----

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생략)

③ (생략)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⑦ (생략)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장애 정도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접수일부터 -----

----- 특별교통수단등 -----

-----.

⑤ -----

재심사할 -----.

⑥·⑦ (현행과 같음)

<삭 제>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
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의 장애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
량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
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
운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
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신 설>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신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2조의3(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2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 이용계약 기간 및 보행보조기구 사용여부가 명시된 서류

나. 제12조의2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다. 제12조의2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라. 제12조의2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증명서류 및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마.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2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생략)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	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가 탑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대상자의 안전한 승·하차 및 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보조인 1명을 동승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 특별교통수단등을 -----. 1. (현행과 같음)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
--	--

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
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
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부터 기산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준
수사항) ① (생 략)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
체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
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
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
역) ① (생 략)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
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
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
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

-----.

② -----
----- 제12조 및 제12조
의3-----.
----- 제13조-----

-----.

제16조(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준
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용자의 -----

-----.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
역) ① (현행과 같음)

② -----

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목적지까지의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④ (생략)

제20조(위탁 및 운영) ① (생략)

<신설>

②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

-----.

1. (현행과 같음)

2. 목적지까지 -----

3. -----
----- 특별교통수단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탁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 한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

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한다.

④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

----- 재위탁 여부
-----.

⑤ 제4항에 따른 재위탁을 위한 평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예산의 확보) ----- 특별교통수단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